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개인정보 유출·침해,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에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0호, 2026. 8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,

처 소관 법무·규제 업무 및 민원·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기획조정관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8월 27일까지 존속하는 법무민원팀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8. 7. ~ 8. 1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기획재정담당관·혁신행정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”을 “기획재정담당관·혁신행정담당관·국제협력담당관 및 법무민원팀장”으로, “서기관으로”를 “서기관으로, 법무민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처 내 공무원 제안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

⑥ 법무민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.

1. 법령안·훈령안의 심사 및 행정심판업무
2. 법령질의·회신의 총괄 및 법규집의 편찬·발간
3.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업무 총괄·조정
4.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의 운영
5.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전에 관한 사항

제7조제3항제9호를 삭제한다.

별표 3 중 총계 “707”을 “708”로, 일반직 계 “706”을 “707”로, 행정주사·

통계주사·공업주사·전산주사·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“208”을 “209”로 한다.

별표 4 중 총계 “707”을 “708”로, 일반직 계 “706”을 “707”로, 행정주사·통계주사·공업주사·전산주사·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“210”을 “211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으로 시행되는 법무민원팀은 2029년 8월 27일까지 존속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법무민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혁신행정담당관이 분장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획조정관) ① (생 략)	제4조(기획조정관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기획조정관 밑에 <u>기획재정담당관 · 혁신행정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</u> 각 1명을 두며,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<u>서기관으로</u> 보한다.	② ----- <u>기획재정담당관 · 혁신행정담당관 · 국제협력담당관 및 법무민원팀장</u> ----- ----- <u>서기관으로, 법무민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전산사무관 ·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</u> 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.	④ ----- ----- 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<u>민원(국민제안을 포함한다)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의 운영</u>	<삭 제>
7. <u>법령안 · 훈령안의 심사 및 행정심판업무</u>	<삭 제>
8. <u>법령질의 · 회신의 총괄 및 법규집의 편찬 · 발간</u>	<삭 제>
9. <u>통계조사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</u>	<삭 제>

10. ~ 12. (생략) <u><신설></u> ⑤ (생략) <u><신설></u> 제7조(통계정책국) ①·② (생략) ③ 통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8. (생략) <u>9.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</u> 10. (생략) ④ ~ ⑦ (생략)	10. ~ 12. (현행과 같음) <u>13. 처 내 공무원 제안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</u> ⑤ (현행과 같음) <u>⑥ 법무민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.</u> 1. 법령안·훈령안의 심사 및 행정심판업무 2. 법령질의·회신의 총괄 및 법규집의 편찬·발간 3.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업무 총괄·조정 4.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의 운영 5.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제7조(통계정책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 1. ~ 8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10. (현행과 같음) ④ ~ ⑦ (현행과 같음)
---	--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3]

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정원표(제18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707</u>	<u>708</u>	+1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706</u>	<u>707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 · 통계주사 · 공업 주사 · 전산주사 · 농업주 사 또는 사서주사	<u>208</u>	<u>209</u>	+1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4]

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정원표(제18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707</u>	<u>708</u>	+1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706</u>	<u>707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·통계주사·공업 주사·전산주사·농업주 사 또는 사서주사	<u>210</u>	<u>211</u>	+1
·	·	·	
·	·	·	